

1. 제정이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방병원 임직원·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위원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에 따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할인 서류)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2.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퇴직 전 당해 관서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퇴직 후 최초 진료 시)
5. 소방병원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소방병원에 소속된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3조(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상, 재활, 정신건강 및 건강증진 등 관련 전문의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의료기관·보건의료연구기관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병원경영·보건행정 등 관련학과 교수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소방정 이상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건·의료·회계 분야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보건·의료·건축·회계 또는 소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병원 운영평가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